

의안번호	제 490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   월    일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10월 31일

#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49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10월 31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(17. 1.12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“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”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(사직동)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
- 수탁기관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  
※ 現, 수탁기관 : 학교법인 충청학원(2014. 1. 13 ~ 2017. 1. 12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
- 사 업 비 : 667백만원(도비 100%) \* 연도별 변동가능
- 위탁 주요사무
  -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여가 증진사업
  - 노인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소득보장·재가복지에 관한사업
  - 노인평생교육 및 복지후생사업
  - 노인전문상담 및 고용지원 사업
  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
- ※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(별첨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現,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
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(사직동)
- 규 모 : 용지 11,985m<sup>2</sup> ~ 건물연면적 4,023.78m<sup>2</sup>(지하1층, 지상3층)
- 수탁기관 : 학교법인 충청학원(2014. 1. 13 ~ 2017. 1. 12)
- 사 업 비 : 667백만원(도비 100%)
- 주요업무 : 평생교육, 취미생활, 사회참여활동, 건강증진, 여가증진 등
- 조직·인력 : 20명(관장1, 사무국장1, 부장1, 팀장3, 팀원14) ※비상근(4명) 별도  
※ 관장 : 심의보(충청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)
- 이용현황 : 등록회원 7,084명 ※ 1일평균 이용인원 832명
-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경과
  - 노인회 충청도연합회('99. 1. 13 ~ '05. 1. 12 / 2년주기 3회)
  - 학교법인 충청학원('05. 1. 13 ~ '17. 1. 12 / 3년주기 4회)

#### 나. 관계법령 : 별첨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 등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--

#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---



보건복지국  
노인장애인과

#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충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('17.1.12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노인의 여가복지문화 증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

- 민간위탁(5년),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 -

## I. 추진근거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- 「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 등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## II. 위탁개요
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(사직동)
  - 위탁범위 :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전반
  - 위탁기간 : 5년('17. 1. 13. ~ '22. 1. 12.)
  - 위탁방법 :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
  - 사 업 비 : 667백만원(도비 100%) \* 연도별 변동가능
  - 위탁사무
    -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여가 증진사업
    - 노인건강증진, 평생교육, 노인전문상담 및 고용지원사업 등
    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  -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
- ※ 現, 수탁기관 : 학교법인 충청학원(이사장 유선규, '14. 1. 13 ~ '17. 1. 12)

### Ⅲ. 추진체계 및 절차

① 추진계획	• 추진계획 수립	'16. 10월
② 의회동의	• 민간위탁 의회동의(11월 회기중)	'16. 11월
③ 수탁방법	• 수탁기관 선정 - 방법 : 공개모집(공고15일) 또는 재위탁 - 자격 :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	'16. 11월
④ 수탁심사	•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- 구성 : 6~9명 정도 - 심사 : 전문성, 사업실적, 사업계획 등 - 결정 : 공개모집(고득점자 선정) 재위탁(사업실적, 운영효율성 등 고려)	'16. 12월
⑤ 협약공증	• 협약체결 및 공증	'16. 12월
⑥ 사무개시	• 위·수탁 사무개시	'17. 1. 13

### Ⅳ. 세부 추진계획

#### ① 수탁기관 선정

○ 선정방법 :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

- 공개모집 : 도홈페이지 공고(15일) 후 사업계획서 접수,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(고득점자 선정)
- 재 위 탁 : 사업실적, 운영효율성 등 고려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

○ 신청자격 : 「사회복지법인」 제3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법인

※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

○ 위탁조건

- 법령·조례·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
-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의 사업 적극 지원
-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고용승계 의무 이행

## ②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

- 심의대상 :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
- 개최시기 : '16. 12월 \*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준용
  - 구성인원 : 6~9명 이내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    - ※ 당연직 3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), 기타(전문가) 위촉
  - 심사항목 : 수탁자 재정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사회협력 등
- 계획설명 :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(공개모집 또는 재위탁)
- 수탁자 선정
  - 공개모집의 경우 : 고득점기관 선정
  - 재위탁의 경우 : 사업실적, 운영효율성 등 고려 선정

## ③ 협약체결 및 공증

- 체결시기 : '16. 12월
- 내 용 :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, 업무 인수·인계
  - ※ 업무 인수·인계(수탁기관 변경시)

## V. 향후계획

-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6. 11월
- 수탁기관 선정방법 결정 : '16. 11월
-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'16. 12월
- 협약 체결 및 공증 : '16. 12월
- 위·수탁사무 개시 : '17. 1. 13

# 관 계 법 령

## □ 노인복지법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## 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“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[보건복지부령](#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[제40조](#)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[제7조제3항](#)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[보건복지부령](#)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[보건복지부령](#)으로 정한다.

## □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[법 제34조제4항](#)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**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**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**

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19조의2(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)**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을 하는
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·인가·면허·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·인가·면허·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
2.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「소득세법」 제168조, 「법인세법」 제111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

### **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**

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
### **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**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,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## **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**

**제9조(계약의 방법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(指名)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## **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**

**제12조(입찰의 성립)**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.

**제19조(재입찰 및 재공고입찰)**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.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,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.

**제26조(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, 같은 항 제5호에 따른

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·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·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## □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6조(위탁운영 등)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## 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
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## 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

**제3조(수탁기관 선정절차)**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탁사무 해당부서(이하 “소관부서”라 한다)에서 구성·운영한다.

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### **제6조(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**

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·업무주관실·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·과·소장이 된다.

**제8조(위탁기간)**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